

#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4. 11. 제출되어 4. 18.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단원구청 개청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위임권한을 재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임범위 조정 등 위임권한 재정비(안 별표2)
  -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무 중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행정대집행의 특례”, “과태료의 징수” 단위사무  
[시장(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 → 구청장]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2)
  - 회계과 소관의 “시 소속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 (시장 → 구청장)

## 3.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단원구청 개청 등에 따른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위임권한을 재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디

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무 중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행정 대집행의 특례”, “과태료의 징수” 등 단위사무 권한을 시장(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에서 구청장 위임범위로 조정 등 위임권한을 재정비 하였고 회계과 소관의 “시 소속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위 사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신설하여 사무의 위임 근거가 되는 위임사무명 등을 현행화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무의 위임에 따른 위임받은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인력 및 사무추진에 충분한 검토와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4. 11. 제출되어 4. 18.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2018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행안부)」에 따라 통보된 국가 시책, 사회복지분야 및 공공행정 등 현장 위주의 지역현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업무에 대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 (안 제2조)
  - 총 수 : 2,009명 → 2,048명 (39명 증)
  - 집행기관 : 1,979명 → 2,018명 (39명 증)
  - 의회사무기구 : 30명 → 30명 (-)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 종류별 정원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원	현 행	2,009	1	1,990	3	4	11
	개정안	2,048	1	2,029	3	4	11
증 감		+39	-	+39	-	-	-

- 직급별 정원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2급	3급	4급	5급	6급이하	전경력관	5급상당	6급상당이하			
정원	현행	2,009	1	1	1	15	110	1,862	1	1	2	4	11
	개정안	2,048	1	1	1	15	110	1,901	1	1	2	4	11
증감		+39	-	-	-	-	-	+39	-	-	-	-	-

### 3. 검토의견

- 「2018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행안부)」에 따라 국가 시책, 사회복지분야 및 공공행정 등 현장 위주의 지역현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업무에 대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정원 39명의 순수인건비 증액 1,573,206천원을 「지방자치법」 제66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었으며,
-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총 정원이 2,009명에서 2,048명으로 총 39명 증원되었고 세부적 증원 현황을 보면 7급 3명과 8급 11명 9급 25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민원 및 사업부서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인원을 요청하고 있는바 지원부서와 민원 및 사업부서에 대한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 안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4. 11. 제출되어 4. 18.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선부메트로타운(선부동 산73-1번지 일원)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관할 행정동을 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선부3동으로 선부메트로타운 행정동을 결정함.(별표)
  - 선부2동 25개 지번을 선부3동으로 변경 : 선부동 457-3, 469-2, 469-4, 469-7, 469-8, 469-9, 470, 470-1, 471-1, 471-2, 472-3, 472-6, 473, 473-10, 475, 476, 477, 478, 479, 479-1, 480, 481, 482, 483, 산56-4
- 선부2동 및 선부3동의 관할지번을 정비함.(별표)
  - 선부2동 6개 지번을 선부3동으로 변경 : 산75-2, 산75-3, 산88, 산90, 산102-1, 산102-2
  - 선부3동 14개 누락지번 수정 : 선부동 1166, 산71-3, 산71-7, 산73, 산73-1, 산75-5, 산75-6, 산80, 산81, 산82, 산83, 산86, 산87, 산90-2.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선부동 산73-1 일원에 선부메트로타운 아파트가 2018년 8월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본 지번 주변이 선부2동과 선부3동에 중복하여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을 정비 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선부3동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향후 선부메트로타운이 1,600세대 4,000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선부3동으로 행정구역이 정리될 경우 선부2동과 선부3동의 인구 차이가 현재 8천명에서 1만2천명으로 늘어나는 인구 불균형이 예상되며, 입법예고 시 선부2동 지역 주민 650명이 제출한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한 검토와 입주예정자들의 사전 의견 청취를 통한 행정구역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4. 11. 제출되어 4. 18.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단원구청사 개청에 따라 시민에게 개방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양 구청을 포함한 통합 조례로 관리하고자 함.
- 또한, 불필요한 조항, 불명확한 문장을 명확히 수정 함.

##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해당 조례에 단원구청사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대상 명칭 변경 (안 제1조, 제4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신설(안 제3조)
- 양 구청의 사용허가 대상물을 별표1로 규정(안 제5조)
- 구청별 시설물 이용시간, 요금을 별표2로 규정(안 제11조)
- 사용료 감면 내역 중 예식 행사를 상록구로 제한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2호)
-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별 차등 사용료 반환 조항 삭제(안 제13조)

### 3. 검토의견

- 동 조례는 단원구청사 개청에 따라 시민에게 개방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양구청을 포함한 통합 조례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불필요한 조항, 불명확한 문장을 명확히 수정하는 사항으로 단원구청사가 개청하였기에 명칭을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신설하는 사항과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령상 존재 하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4. 11. 제출되어 4. 18.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규제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불편 및 부담 완화
- 용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 제고

## 2. 주요내용

- 교부결정 통지와 관련한 용어의 구체적 명시(안 제18조제2항)
  - 안 제18조제2항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 상위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실적보고서 미제출시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 조항 삭제(안 제22조제4항)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규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지방재정법」1)제32조의8 제7항에 따라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령과 다른 사유(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를 이유로 보조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청을 제한하는 등 법령상 근거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하는 사안과 용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 부터 2018. 4. 11. 제출되어 4. 18.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법령 및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근거법령과 관련조항 등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16조)
-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범위 확대(안 제6조)
- 공무원 파견 규정 현실화(안 제15조)

##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된 1995년6월 제정된 이후 2007년 4월 한차례 개정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2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조문에 대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제6조(사업) 영역을 신재생

에너지사업 및 관련사업의 영역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 입법예고 기간 중 안산도시공사가 제출하며 우려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갖는 고유사업 영역을 넘어 부동산개발업까지 개정안에 담아 명문화하는 것은 안산시가 4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과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와의 사업영역의 중복성에 따른 동 사업에 대한 분리 또는 성격을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5조 회사정원의 1/3 범위내에서” 를 “회사정원의 100분의5 범위에서” 로 하는 것은 현재 75명의 정원에 비추어 25명에서 3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현실성 있는 개정이라고 사료됨.

#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4. 11. 제출되어 4. 18.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법률 제15291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법령위임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명을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함(안 제명)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안 제4조 및 제5조)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안 제6조 및 제7조)
- 안전 심의 및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권리보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 납세자권리현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및 제30조)
-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 3.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1.1.시행)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서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 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다만 납세자 보호관을 선발 및 배치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4. 11. 제출되어 4. 18.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12.26.일부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8525호, 2017.12.29.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안 제9조)
  - 통장 계좌이체에 한하여 500원 세액공제 하던 것을 신용카드 자동 납부하는 경우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추가

(개정전)

고지서 1장당 공제 금액	
자동계좌이체(통장)납부	50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납부	1,000원

(개정후)

고지서 1장당 공제 금액	
자동이체(신용카드 또는 통장)납부	500원
전자송달 납부	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	1,000원

### 3.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8525호, 2017.12.29.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안 제9조) 통장 계좌이체에 한하여 500원 세액공제 하던 것을 「신용카드 자동 납부하는 경우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존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